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심의일시/장소	2022. 5. 12.(목), 14:00 / 서소문 제2청사 스마트회의실(20층)		
사업명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변경)		
신청위치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의결번호	(구조)2022-8-3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구조안전

- ▣ 아래 심의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 분야>

- 지하층이 증설되므로 인접건물의 하중 영향을 고려하여 지하구조물 설계 시 반영하기 바람(※ 본 위원회의 확인을 받기 바람).
-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KDS 14 20 40:2021)에 따라 노출범위 및 등급에 따른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발주처와 협의하여 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KDS 14 20 40:2021)에 따른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를 반영하는 것을 권장함.
- 발주처와 협의하여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2019) 9.3 재료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부재(전이보, 전이기둥 등)의 주근을 내진철근으로 적용하는 것을 권장함.
- 전이보와 전이기둥의 내진상세를 별도로 제시하기 바람.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에 책임기술자의 날인을 하기 바람.
- 한 동에서 두 mass간에 연결된 바닥이 계단실, Elevator Pit, 수직덕트 등의 바닥 Opening을 제외하면 연결부위가 무한강성을 가진 Diaphragm으로 거동하여 지나치게 취약해 보이는 동 평면이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동 평면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보강방안을 마련하기 바람(101, 103, 105, 106동의 단위세대 118A, 104C형 사이 등등 다수의 동에 해당).
- PC부와 RC부 접합부에 대해 검토 후 접합부도면을 추가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에서 PC공법과 RC공법이 혼용되므로 특히 경계 부분의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시하고 Slab, Beam, Gir, Col, H/C Slab의 토압지지 여부의 확인과 실 착공 시 PC 부분의 Shop 도면을 PC Shop 도면 업체에서 책임구조기술자의 확인을 득한 이후 감리자의 최종 승인 후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계속)

- 지하주차장 PC구조에 대한 콘크리트강도와 철근 및 앵커에 대한 강도를 구조도면에 표기하기 바람.
- 콘크리트 치환과 관련하여 지내력 확보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시방서와 토목도면에 명확히 표시하여 감리자로 하여 시공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지하층 굴착이 대규모 굴착이고 4면이 도로임에 따라 어스앵커의 시공 시 주변도로의 지장물 및 지하철과의 간섭이 예상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바람.
- 각 동별로 기초 형식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기초 공사 전 소요지내력의 확보가 어려워 지반을 콘크리트로 치환하는 구간의 경계 부분은 설계지내력이 확보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지하층 증설에 따라 우기를 고려한 지하수위에 대해 부력을 재검토하고 영구배수공법 적용 시 이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기 바람.
- 지하층이 증설됨에 따라 지하층 슬래브 두께 산정 시 횡력에 대한 지압력을 고려하기 바람.
- 모든 코어는 환기가 가능한 형태로 배치 시키기 바람(104, 108, 114, 117동 등).
- 침실과 인접하여 배치된 엘리베이터가 많으므로 소음, 진동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 106동 일반 E/V의 방향을 홀쪽으로 변경하고 홀 폭을 조정하기를 권고함.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의 경우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동조 제7항에 따라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 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공 시 협력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고, 당해 건축구조기술사는 시공 시 협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조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끝.

2022. 5. 12.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